독일의성 매매법 - 문제 제기, 영향, 평가

안냐 슈미트, 라이프찌히 대학교 법과대학

2002년 1월 1일 독일에서는 "성 매매 여성의 법적 권리를 위한 법(성 매매법, ProstG)이" 발효되었다. 이와 함께 성 매매의 사회적인 현상과 법적인 문제 해결 방안들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성 매매 시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이 일어나므로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성 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성 매매의 사회적인 평가가 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들은 자발적인 성 매매 결정에 대한 법적 인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 자의 경우본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택했으므로 그 결정에 따른 권리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성 매매도 '다른 직업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 매매 여성들의 법적, 사회적 상황이 문제이며, 이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 결과, 극과 극을 이루던 의견들은 성 매매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2007년 12월



독일에서는 2002년 1월 1일 "성 매매 여성의 법적 권리를 위한 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의 제정 전에는 성 매매를 허용하면서도 성 매매 여성들을 차별하던 사회의 이중적 도덕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 매매법의 규정과 성 매매 여성들의 법적, 실질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입법 의도와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이어서 이런 의도가 부분적으로만 실현 가능했던 이유, 정치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반응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겠다. 결론에서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성 매매가 가능할 경우와성 매매를 그만 두려는 여성들을 지원할 때 왜 인간 존엄성에 대한성 매매 정책이 정당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f I}$, 출발점: 성 매매 여성들에게 불리한 사회의 이중적 도덕성

성 매매법의 제정 배경에는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이중적 도덕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성적인 서비스를 법적으로 '살'수 있었다. 이것은 특히 남성들이 이용했다. 하지만 성 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국가는 성 매매 여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익을 보았다.

법적으로 성 매매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성 매매와 관련된 계약 의 경우 단지 '풍속에 어긋나는 것' 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계약으로 생각했다. 그 이유는 바로 몸, 성, 성 행위의 매매는 풍속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이 의 풍속' 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보 았다.

법적으로 성 매매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성 매매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단지 '풍속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계약으로 생 각했다. 그 이유는 바로 몸, 성, 성 행위의 매매는 풍속에 어긋나는 것 이므로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이의 풍속' 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보았 다. 그 밖에도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으 로 생각했다. 도덕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돈을 댓가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는, 비록 자발적인 것이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성 매매 여성, 성 매매 알선업소 주인 과 성 매매 여성 간의 약속 혹은 계약은 효력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 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도 성 매매 여성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강요하지는 못했지만,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성 매 매 여성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란 매우 어 려웠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돈을 받지 않으 면 성 매매 여성들 또한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받아내기란 어려웠던 것이다. 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내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돈을 댓가로 하는 성 매매, 즉 '판 때품'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 매매 여성들이 성 매매업소 주인들에게 더욱더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성 매매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은 업소 주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성 매매 여성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간보호자'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성 매매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성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형법 제180a조의 1 제 2항에 따르면 성 매매 여성들에게 성 매매를 위해 집, 숙소 혹은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들을 지원할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성 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혹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법이 성 매매를 허용하나 성 매매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성 매매 시 착취 관계를 지원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성 매매 규정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으로 성에 대한 주도적이고 사회적인 평가와 조정을 들 수 있다. 하나의 가설로는 '성 매매와 결혼은 남성에게 여성의 성을 제공하는 것이다'가 있다. 특히 결혼생활에서는 여성의 성이 감시를 받는 반면, 남성들은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성 매매 여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부도덕하고 음탕하다고 여겨 사회에서 소외 시켜 성적인 거래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독일의 고용 계약서는 사회 보험을 포함해야 한다. 성 매매 여성들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와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었다.

국가가 성 매매 여성들의 법적인 보호에 실패 했지만, 과거부터 현재 까지 경제적인 요소로서의 성 매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풍속에는 어긋나는 행위였지만, 세금은 걷었다. 그것도 성 매매는 가장 불리한 항목에 분류되어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성매매여성자립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그 당시 독일의 연간 성 매매 매출액이 약 125억 마르크에 달했고, 요즘에는 약 145억 유로일 것이라고 한다. 이 액수는 독일의 대기업인 칼슈타트와 크벨레의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다.

법안은 '고객이나 업소 주인의 이익이 아닌 성 매매 여성들의 법적인위치'를 개선해주는 것을 목적으로했다. 성 매매를 촉진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 매매 여성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했다.

법적으로 괄시를 받았던 것은 바로 약 400,000명의 성 매매 여성들, 즉 실질적으로 성 노동을 했던 여성들이었다. 다른 형태의 성 매매에 대한 통계는 없다. 성 매매를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정해 버린 법 때문에 성 매매가 사회적으로 배척당해야 하는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회의 현실과는 다르다. 성 매매는 실제로 경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일 다양한 연령층, 사회층, 즉 노동자에서부터 경제인,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약 12,000,000명의 남성들이 성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에 공공기관,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이 수치를 기초로 삼았다.)

누구나 인간 존엄성을 기초한 자신의 성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000년도에 베를린 행정재판소는 성 매매가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은 (이 경우 숙박업 관련 법) 사람들의 공 동생활에서 정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풍속의 최저점이 어디 에 있는 가를 정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법정이 도덕적 표현인 풍속을 법적인 평가를 위한 잣대 로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독일 사회의 도덕성에서 성 매 매가 어긋나는 행위인가를 검토한 후 범죄가 아닌 성인의 자율적인 성 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 었다. 물론 법은 성 매매 여성이 인간 존엄성의 틀 안에서 돈을 댓가 로 하는 성 매매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간 존엄성을 기초한 자신의 성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모든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압에 의한 성 매매나 아동이 성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권리 같은 인격권이 침해 당할 경우에만 예 외이다. 따라서 법이 사회에서 일반적인 도덕적 견해와 일치하도록 성에 대해 규정해서는 안 된다. 판결은 해당되는 피고와 원고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성 매매가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베 를린 행정재판소의 판결은 전반적 여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rm II}$. 성 매매법과 논쟁 중인 대안들

1. 성 매매법 – 성 매매 여성들의 법적인 안전 대책

2001년 10월 19일 성 매매법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 되었다. 독일사회 민주당과 연합90/녹색당의 연정 정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안에 대해 사회민주당, 연합90/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이 찬성, 민주사회당은 대부분 찬성(기권 2표), 기독교민주연합당/기독교사회연합당은 반대했다(기권 2표).

법안은 '고객이나 업소 주인의 이익이 아닌 성 매매 여성들의 법적인 위치'를 개선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성 매매를 촉진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 매매 여성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했다. 제1장 1조가 바로 성 행위를 하기 전에 정해진 가격이 있을 경우 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사전에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것이다. 성 매매 여성들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댓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법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고객, 업소 주인, 고용주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 매매 여성들에게 "고용 계약서"를 지키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은 없다.

제1장 3조에 따라 일반 노동자처럼 활동을 하는 성 매매 여성들이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 매매 여성들이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고용 계약서의 체결 또는 위생적인 환경의 제공과 같은 점들이 형법 제180a조의 1 제2항을 성 매매법 제2장의 법문에서 폐지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좋은 환경에서의 근무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법은 성 매매로 돈을 벌겠다는 개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은 성 매매를 사회적인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가치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는다. 물론 법문의 부연설명에서는 성 매매가 풍속에 어긋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풍속에 어긋나는 것 혹은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직업의 인정과 같은 내용은 없다.

성 매매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성 매매 여성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 매매 여성들의 법적인 위치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업소 주인들과 포주들에게 의존하는 환경의 개선, 더 좋은 근무 환경, 성 매매 여성들의 사회보험 혜택이가능해지도록 노력했다. 법안의 제목이 '성 매매 여성들의 법적인 관계'를 개선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나, 성 매매가 필요로 하는 많은 부

법은 성 매매로 돈을 벌겠다는 개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은 성 매매를 사회적인 현실로 받아들이지만가 치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는다. 물론 법문의 부연 설명에서는 성 매매가 풍속에 어긋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성 매매와 범죄는 항상 연결되므로 성 매매가 범죄를 배척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제180a조의 1 제2항을 없애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경미한 조건들로도 성 매

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분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 매매 허용 장소에 관한 건 축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성 매매를 할 수 없 는 특정 지역을 지정한다면, 범죄율이 높은 홍등가 지역이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게다가 성 매매법은 자발적, 합법적으로 성 매매 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 최대한 성 매매 여성들의 절반만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제적으로 혹은 협박을 받 아 성 매매를 할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성 매매를 하는 이주 노동자들에 관련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불법으로 성 매매를 한다. 왜냐하면 성 매매를 하 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2. 성 매매의 법적인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 성 매매 여성들의 인간 존엄성

기독교민주연합당과 기독교사회연합당의 원내 교섭단체는 법안 제 정의 결의과정 중 성 매매법안의 제정에 반대했다. 반대의 이유로는 인간의 은밀한 부분을 침범하기 때문에 성 매매가 독일 기본법에 명 시된 인간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성 매매가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 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직업을 위해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앞으로도 성 매매 여성들에게 노동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 매매 여성들의 법적, 사회 적인 상황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성 매매 여 성들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성 매매와 범죄는 항상 연결되므로 성 매매가 범죄를 배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제180a조의 1 제2항을 없애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경미한 조건들로도 성 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성 매매의 뒷배경을 보다 자세 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더욱 자세한 조사를 할 때에는 대부 분 인신매매와 같은 중 범죄가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 제180a조의 1 제2항을 없애면 강제 성 매매와 형사적, 형법적으로 처 벌이 가능한 인신매매를 발견할 수 없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 성을 우려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성 매매법에 반대했다. 성 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을 해치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이 상품이 되기 때 문이다. 또한 성 매매가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다. 자발적인 성 매매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

Friedrich-Ebert-Stiftung

하면 여성이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 매매를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다른 직업을 택할 때와는 달리 성 매매는 대부분 자신의 결정으로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다. 대부분은 성 매매업소 주인에 대한 의존이나 마약 중독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할 때 또는 낮은 학력 때문에 성 매매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 매매를 하게 된다. 사회적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성 매매 여성들이 많고, 대부분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거나 다른 형태의 성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 경험을 갖고 있다. 성 매매를 하는 이주 여성의 경우, 대부분 자국에서인정 받을 수 있는 직업 또는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자율적으로 성 매매를 직업으로 택한다. 예를 들어, '홍등가'가 아닌작은 업소용 아파트에서 사는 여대생의 경우 부업으로 성 매매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해당 여성이 직접 서비스 유형과 가격을 정하게된다.

3. 성 매매가 '일반적인 직업' 과 같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

성 매매법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페미니스트적 구상이 있었다. 바로 독일성매매운동과 연합90/녹색당이 지난 선거철에 성 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직업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 매매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므로 고용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의사나 공장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성 매매 여성도 약속한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당의 법안에서도 성적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을 보완해서 고용 계약의 법적 권리를 성 매매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로서의 성 매매 여성들이 모든 혹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거절할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의 성 매매 여성들은 풍속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적인 인간 존엄성에 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의 동 등함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어떤 식으로 성적 활동을 할 것인 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성 매매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므로 고용 계약이 유효해 야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의사 나 공장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성 매 매 여성도 약속한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Ⅲ. 성 매매법의 영향과 평가에 대한 논쟁

성 매매법으로 의도한 관심 사항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 이 법에 대한 영향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1. 풍속에 어긋나는 행동

성 매매법에는 성 매매의 풍속 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 지 않다. 그러므로 아직 많은 판결과 법학에서는 성 매매가 풍속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성 매매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 으므로 성 매매의 댓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법적 분야에 서 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일반 집과 별 차이 가 없는 성 매매업소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 이러한 업소를 운영해도 되는가에 대한 건축법적인 문제가 있다. 성 매매법을 반대하는 몇몇 비평가들은 이 법으로 인해 성 매매가 어떤 다른 직업처럼 사회에서 인정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특히 성 구매자들은 성교 시 콘 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요구를 거리끾 없이 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된 직종이기 때 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성 매매에 빠질 위험이 있다. 실업자의 경 우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성 매매라는 직업을 택해야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국가기관을 통한 일자리 소 개와 취업 상담의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 실업 자들이 간절하게 새로운 직장을 구해도 성 매매를 하라고 소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아직 많은 판결과 법학에서는 성 매 매가 풍속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성 매매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성 매매의 댓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다 른 법적 분야에서 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2. 보상 요구의 법적인 관철

필요한 경우 일에 대한 댓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했던 성 매매 여성들은 거의 없다. 서비스 를 제공하기 전에 댓가를 이미 지불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요구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 매매 여성과 고객은 서로의 신분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객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고 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 고객을 대하 는 성 매매 여성들의 태도가 훨씬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추정한다.

3. 성 매매 여성들의 직업 환경과 사회법적인 안전 대책

성 매매법이 제정된 이후 성 매매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

법적으로 보호해 줄 고용 계약서를 체결한 성 매매 여성들이 거의 없 다. 이것은 앞으로도 많은 성 매매 여성들이 성 매매업소 주인과 포 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노동시간, 장소, 방법을 지시 받을 것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입 감소 의 염려와 이 계약서에 따라 법적으로 포주 혹은 업소 주인과 연관되 는 것을 꺼리는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 매매법에는 고용주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예를 들 어, 어떤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 성 매매업소 주인 과 포주에게 고용 계약서는 손해다. 왜나하면 성 매매 여성에게 시간 과 장소만을 지정해 줄 수 있고, 성 매매 여성이 특정 고객에 대한 서 비스를 거부할 경우에도 성 매매 여성에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 계약서의 체결로 성 매매업소와 포주들은 경제적으로 더 큰 손 해를 입을 수 있다. 이들이 더 많은 이익금을 갈취해 가는 현실은 바 뀌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 매매법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성 매매 여성 들의 노동 환경을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성 매매 여성들의 실질적인 노동 환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적은 수의 성 매매 여성들만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에 가입했다. 학생 신분이나 본업을 가진 성매매 여성들은 나름대로 사회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 매매 여성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성 매매법으로 생긴 법적 안정의 가능성이 실제로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성 매매 여성들이 의료보험기관에 자신의 직업을 감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의료보험기관과 민간 보험시는 성 매매 여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 질병 위험에 많이 노출된 성 매매여성이 가입하는 것을 꺼릴 수 있을 것이다.

4. 강제 성 매매와 인신 매매의 형법 조치의 효과

형법 제180a조의 1 제2항이 없어지면서 강제 성 매매, 인신 매매 등과 같이 홍등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단속이 더 어려워질거라는 염려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성 매매법의 효력에 관한 연방보고서에 의하면, 형법 제180a조의 1 제2항이 없어지는 것과 포주를형사 소추하는 일 그리고 인신 매매의 단속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수사기관이 답했다. 오히려 제180a조의 1 제2항을 없앤 것

성 매매법으로 생긴 법적 안정의 가 능성이 실제로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성 매매 여성들이 의료보험기관에 자신의 직업을 감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의료보험기관과 민간 보험사는 성 매매 여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 질병 위험에 많이 노출된 성 매매 여성이 가입하는 것을 꺼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성 매매 여성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5. 전업할 기회 지원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 매매 여성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즉 독자 적인 성매매에 종사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용 계약을 하 고 일하는 경우는 드물다. 앞으로도 많은 성 매매 여성들은 인간 관 계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 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 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의 원내 교섭단체는 성 매매법에 의문을 제기하 지 않는다. 하지만 성 매매에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돕 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 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업 프로그램과 직업 교육을 통해서 많은 성 매매 여성들이 전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에 연방주들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각 주 마다 성 매매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가 있고 주가 상담소를 경제적으 로 지원한다. 성 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상담을 원한다. 또 한 성 매매업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 려움들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경우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 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 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상담을 원한다. 또한 성 매매업에 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경우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최종 평가

성 매매법이 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보수적이고 일부 페미니즘적인 집단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법이 지금 까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법의 제정으로 윤리적 터부를 뛰어넘는 자율적이고 비착취적인 성노동을 위한 불가결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마련된 가능성의 활용 여부와 방법은 성매매 사업 관련자들인 성매매 여성, 업소 주인, 의료보험 기관, 고객 등의 손에 달렸다. 이 때법이 달성할 수 없거나 대체할 수 없는 행위자들의 의식 변화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 다시 말해, 법적 가능성이 지금까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은 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하는 나쁜 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성매매법의 제정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터부를 깨뜨리고 자율적 성행위의 영역을 성매매사업 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다.

성 매매법은 성적 서비스의 자율적 '판매' 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 이다. 이 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발적인 성 매매자들에게 고용 관계 를 통해 보장된 또는 자영업자로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더 이상 성 매매를 신체를 상품화한다는 부정적이고 착취적 의미로 이야기할 수 없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주적인 선 택은 마치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가적 능력을, 정신치료사가 정서적 상담 능력을, 건설노동자가 체력을 돈으로 받는 대신 제공 즉, "판 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하는 선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선택이란, 선택하는 당사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내리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 매매 라는 표현 대신 성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성 매매를 헌법으로 규정하는 직업이라고 확실히 인정해주거 나 성 매매를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가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 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때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공자의 매우 은밀한 부분과 관련이 있고 신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상당히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성 및 자율성 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성 매매가 일반 직업으로 인정 받을 경우 성 매 매 노동자에게 언제든지 특정 고객 또는 특정한 성적 행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성 노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이 다름 아닌 성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며 각 개인이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많은 합법적 성 매매 여성들도 착취 당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과 정치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짓밟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 매매 사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자율적 성 노동의 보장과 성 매매를 그만 두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 인간이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스스로 선택할 존엄성을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성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을 바탕에 둔다.

결국 성 매매법은 실제로 성 노동에 참여하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성매매여성자립단체에 따르면, 강제 성 매매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공자의 매우 은밀한 부분과 관련
이 있고 신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상당히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성 및 자율성
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독일 성 매매 여성의 절반 밖에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불법으로 성 매매를 하는 이주 여성 문제가 있는데 이들에게 체류 및 노동 허가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미성년자 성 매매 방지와 인신 매매 및 성 매매 강요의 방지 역시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 구매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성 매매 여성이 성 매매를 강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성 매매를 강요한 성 구매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밖에 사회에서 자발적인 성 노동을 금기시하는 시각에 대해 좀 더 자유롭고 당연시 여길수록 범죄와 성 매매가 연계할 공간도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

발 행 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주한 협력 시무소

편 집 인: 베르너 캄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 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홈페이지 (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7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